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 조 례 안 상 정

(조 례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31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2 ~ 32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2 ~ 3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2 ~ 35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2 ~ 3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29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31
----------	-----------

제출연월일	2012. 5. 1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할 법령을 규정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8조)

○ 3년 이내 ⇒ 5년

나.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조항 수정(안 제16조)

○ 현행

- 휴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제16조)

-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준용(제17조)

○ 변경(안 제16조)

-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다. 「영유아보육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안 제4조·제12조·제14조·제18조·제19조·별지 제2호서식)

○ 종사자 ⇒ 보육교직원, 직원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라. 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안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2012년 보육사업지침(보건복지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2.3.28. ~ 2012.4.16.)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된 보육시설인”을 “설치된”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중 “3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의료급여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계약의 해제)”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해제”를 “해지”로 한다.

제3장 제목 “(종사자 관리)”를 “(보육교직원 관리)”로 한다.

제12조 제목 “종사자 임면”을 “임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종사자는”을 “직원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타종사자는”을 “그 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은”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본문 중 “시설장 및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한다.

제17를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복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교육청초등장학사”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업무관련 장학사”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한다.

별표·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설치된 ----- ----- -----</p>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p>제4조(보육대상) ----- ---- 그 밖의 ----- ----- 1. ~ 2. (현행과 같음)</p>
<p>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아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아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p>	<p>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p>	<p>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7. 일반가정 자녀</p>	<p>7. 일반가정 자녀</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 시킬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 시킬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위탁운영기간) ----- 5년으로 ----- -----</p>
<p>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생략)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급여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육교직원을----- 「국민건강보험법」----- -----</p>
<p>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p>	<p>제11조(계약의 해지) ----- ----- ----- 해지 ----- 1. ~ 4. (현행과 같음)</p>
<p>제3장 종사자 관리 제12조(종사자 임면)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기타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p>	<p>제3장 보육교직원 관리 제12조(임면) ----- ----- 직원은----- ----- ----- 그 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은-- -----</p>
<p>제13조(종사자의 자격)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한다.</p>	<p>&lt;삭 제&gt;</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② ~ ③ (생략)</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4조의2(시설장의 임기) ① 어린이집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14조의2(시설장의 임기) ① ----- ----- ----- ----- ----- <u>&lt;삭 제&gt;</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한다.</p>	<p>제15조(전보) ----- ----- 보육교직원을 ----- -----보 육교직원을-----</p>
<p>제16조(휴가)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 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p>	<p>제16조(복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7조(휴직)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직 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p>	<p><u>&lt;삭 제&gt;</u></p>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 의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p>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 보육 교직원----- -----</p>
<p>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청초등장학사로 구성한다.</p>	<p>② ----- ----- ----- -----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업무 관련 장학사-----</p>
<p>제19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p>	<p>제19조(징계권자) ----- ---</p>
<p>1. 시설장 : 군수 또는 수탁자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 : 임면권자</p>	<p>1.----- 2. -----직원-----</p>



[별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아림로 66</u>
상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상동8길 7</u>
중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대평7길 20-5</u>
동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중앙로2길 19</u>
위천어린이집	거창군 위천면 <u>원학길 357</u>
소만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소만2길 62 소만주공 아파트 104동</u>

## ○ ○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거창군이 설치한 ○○어린이집(주 소)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 소)을 “을”이라 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운영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케 한다.

1. 시설명 : ○○어린이집
2. 소재지 : 거창군 ○○읍면 ○○로 ○○
3. 재산표시 : ·부지 :             $m^2$ , 건평 :             $m^2$   
              ·건물구조형태 명기 (비품목록은 별첨)  
              ·수용정원 :            명

**제3조** (위탁기간)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보육관계법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보육교직원과 입소 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 하거나 1억원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이에 해당하는 보증인 포함)로 제공하여야 한다.
8. 보육교직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 (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근무상한연령 초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에 따른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그 밖에)** ①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보육관계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거    창    군  
                  위대표    거    창    군    수    (인)

수탁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    (인)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 용 식

#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32
----------	-----------

제출연월일	2012. 5. 1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안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 임용시험 시행기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
  -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 방법),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제48조(시험위원)를 준용
-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 별정직공무원의 상위 직위 결원발생 시 하위 직위 현직자를 임용 시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생략
  -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 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
- 라.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안 제10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마.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3조, 제65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2. 3. 30. ~ 4.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임용절차 등) ①</b>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b>②</b>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1. <u>비서관 및 비서</u></p> <p>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u></p>	<p><b>제5조(임용절차 등) ①</b>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u></p> <p><b>②</b> <u>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p> <p><b>③</b>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1. <u>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p> <p>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3. <u>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 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4. <u>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u></p> <p><b>④</b> <u>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0조(직권면직) (생략)</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된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될 때</p> <p>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p> <p>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p> <p>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0조(직권면직)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 -----</p> <p>-----</p> <p>-----</p> <p>2. -----</p> <p>-----</p> <p>-----</p> <p>3. -----</p> <p>-----</p>

현행	개정안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p> <p>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p> <p>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4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절차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음

## 4. 작성자

행정과장 정삼영

## 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33
----------	-----------

제출연월일	2012. 5. 1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2012년 경상남도 출산지원시책사업중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증액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저출산 극복의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변경(안 제5조제6호)
  - 20만원 지원 ⇒ 50만원 지원
- 나. 출산장려지원대상 자격 변경(안 제6조제3항)
  - 태아 건강보험 대상자 :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 다. 출산장려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변경(안 제8조)
  - 읍·면장 신청서 접수 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소요예산 : 31,000천원(도비 30%, 군비 70%)
  - 도비 9,300천원 확보
  - 군비 부족액 14,500천원 1회 추경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2. 4. 18. ~ 5. 10.)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을 “둘째아이 이상 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5조제6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같은 조 제7호 지원 대상자 중 태아 건강보험은 임신확인일, 출생아 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u>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5. (생 략)</p> <p>6. 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p> <p>7. (생 략)</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 ② (생 략) ③ <u>제5조제6호 및 제7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결혼이민자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u></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③(생 략)</p> <p>1. (생 략)</p> <p>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장려금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 내용 및 규모) -----</p> <p>-----</p> <p>-----</p> <p>-----</p> <p>1.~ 5. (현행과 같음)</p> <p>6. 둘째아이 이상 50만원-----</p> <p>-----</p> <p>7.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②(현행과 같음) ③ <u>제5조제6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같은 조 제7호 지원대상자중 태아 건강보험은 임신확인일, 출생아 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u> -----</p> <p>-----</p> <p>-----</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p>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2012년 경상남도 출산지원시책사업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증액

### 나. 관련 조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창조정책과장 이 환 철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35
----------	-----------

제출연월일	2012. 5. 1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절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하며,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2.3.26~4.14)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li> <li>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li> </ol>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경제과장 이 재 영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36
----------	-----------

제출연월일	2012. 5. 1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군내 출신이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군내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향 거창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고취하고, 군내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범위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장려금 수혜자 군정 홍보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
  - 중소기업 육성

#### 나. 예산조치 : 2012년 예산확보(10,000천원)

- 기타보상금 (301-12)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2. 4. 24. ~ 5. 1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 제조업체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 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기준)**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출생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내인 사람)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 등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추천 등)** ① 제조업체 등에서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② 제1항제1호·제5호는 공부(公簿)의 확인으로 갈음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심사)**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심사 순위는 장기근무경력자,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받은 급여액과 재산세납부액) 순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각 제조업체 등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확인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제5조(지원 범위 및 시기)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하되,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요원 위촉) 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군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요원은 애향심으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애향장려금지원대상자추천서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현재 주소					
등록기준지 (출생시 주소)					
근무업체명					
취업년월일 (근무기간)		근무부서			
졸업학교		졸업년월일			
추천사유					

위 사람은 이 업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제2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업체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자 명부

번호	수혜대상자				취업현황				지급내역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업체명	소재지	취업 년월일	근무 부서	지급일	금액	

※ 가로서식 A4 규격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하되,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경제과장 이 재 영